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0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옥, 도문열,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영희,
이숙자, 이종환, 최기찬,
최호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시스템 고도화에도 최근 경제적위기등 갑작스러운 생활환경변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할을 높여 지역사회속에서 위기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의 연결고리를 복원하기 위한 이웃과 이웃이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웃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행정기관은 제도권의 복지혜택 지원을 통해 위기극복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곳의 자치구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므로, 지역편차의 해소를 위한 제정 필요성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민간협력체계를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표창기준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및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관협력체계) ① 시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8조(표창)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제5조(민관협력체계), 제8조(표창) 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붙임1, 붙임2, 붙임3 참고)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7조(포상금)은 현재 자치구 예산(붙임4 참고)으로 지급하고 있기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에 따른 지급)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중복지원 할 수 없는 상황¹⁾으로 보아 비대상으로 판단함

【참고】 2024년 서울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예산

(단위: 천원)

관련 조항	사업명	예산액
제4조(지원사업)	서울시 돌봄SOS 사업 운영	33,258,580
제5조(민관협력체계)	서울시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890,875
제8조(표창)		

주 :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예산은 총 34,149,455천원임

자료 : 2024년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본 안 제7조(포상금)제2항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붙임1〕 2024년 서울시 돌봄SOS 사업 운영 (본 제정안 제4조 관련)

□ 사업목적

- 자치구 동별 돌봄SOS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
-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4. 1 ~ 12월 (연례반복)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 장애인, 만50세이상 중장년 주 대상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돌봄매니저 배치
 - 구청 내 돌봄지원팀 설치 및 돌봄매니저 배치(복지직1+간호직1), 총괄지원 업무 담당
 - 동주민센터 내 돌봄매니저 배치(복지직1+간호직1),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담당
-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돌봄SOS 제공 10대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5대 중장기 돌봄연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 소요예산 : 33,258,580천원(전액 시비)

□ 향후 기대효과

- 돌봄 인프라 구축과 지역내 돌봄공동체 강화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매뉴얼 제작, 홍보물 제작, 돌봄매니저 간담회 등	= 100,000
	100,000,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돌봄매니저 인건비	= 15,187,500
	- 19~22년 채용인원(675명)	
	22,500,000원 * 675명	
	○ 돌봄SOS 서비스지원 사업비	= 17,907,500
	716,300,000원 * 25개구	
	○ 간호직 돌봄매니저 의료기기 구입비	= 53,580
	190,000원 * 282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돌봄SOS 언론홍보	= 10,000
	10,000,000원	

자료 : 2024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췌

[붙임2] 2024년 서울시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관련 (본 제정안 제5조 관련)

□ 사업목적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촉진시키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12월

○ 사업내용

-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총사업비 : 890,875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자원 연계 증대

○ 민관 지역기반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촉진

□ 산출근거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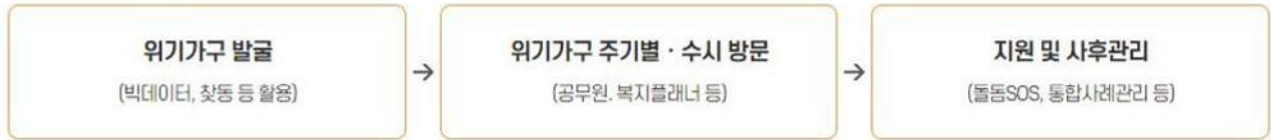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200
	9,200,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 지원	= 50,000
	25개구 * 2,000,000원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 255,000
	425개동 * 600,000원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 576,675
	25개구 * 23,067,000원	

자료 : 2024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췌

〔붙임3〕 2024년 서울시 위기가구 발굴 관련 (본 제정안 제4조, 제5조 관련)

사업개요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18개 기관 38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전체 복지수혜자 대상 위기도(1~4단계)에 따른 연간모니터링 실시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 모텔, 고시원 거주 등 주거 취약계층 전수조사(연2회, 동·하절기)
- 무료급식소,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전입신고서,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시·구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발굴

지원

관리



- 맞춤형 홍보 확대(SNS, UCC공모전, 리플릿, 반상회 소식지, 마을버스TV, 요금고지서, 현수막 등)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는 02-120, 동주민센터
- 어려운 이웃(위기가구)이란?
 - 1)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2)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3)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4)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5)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6)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7)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8)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 9)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

자료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was/cfs/crisisFamilyInfo.do>) 발췌

-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보다 고취시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협조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2023.4.7. 공포)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2 추진개요

- ☐ 사업기간 : 2024.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 사업내용 :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 ☐ 지급요건 :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시
- ☐ 신고자격 : 주소지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 동일 신고자 연 300천원 제한)
- ☐ 사업예산 : 1,500천원(구비 100%)

자료 :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1313) 발췌